

부록

1_서울시 타당성조사 수행 매뉴얼

1) 서울시 타당성조사 개요

(1) 개념

- 이 매뉴얼은 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- 서울시 타당성조사는 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의거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
-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의뢰 이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제도적, 기술적, 재무적,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·환경적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

(2) 목적

- 서울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
- 서울시의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·계획적으로 운영
- 서울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

(3) 근거

-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예비타당성조사)
-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(투자심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(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)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7조(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(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)

-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
-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
-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(행정자치부)

(4) 타당성조사 운용방향

- 건전한 서울시 재정관리제도로 정착 운영
 -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의 합리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
- 서울시 재정의 효율적 집행
 -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의 투자심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
- 투자심사의 객관성·타당성 확보
 - 한정된 투자재원을 사업의 타당성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
- 투자심사제도의 투명성 확보
 -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주요사업들을 검토함으로써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

2) 타당성조사 대상 및 검토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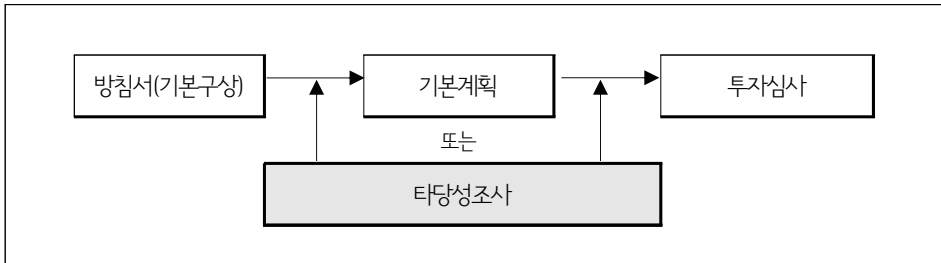
(1) 대상

- 타당성조사 의무 사업(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)
 -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
 -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

-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
- 타당성조사 비의무 사업(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)
 -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, 사업추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검토 등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성·전문성이 필요한 타당성조사
 -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부서의 필요 또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타당성조사

(2) 요청시기 및 검토기간

- 요청시기 : 방침 수립 및 기본구상 후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타당성조사 의뢰(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)



[부록 그림 1] 타당성조사의 요청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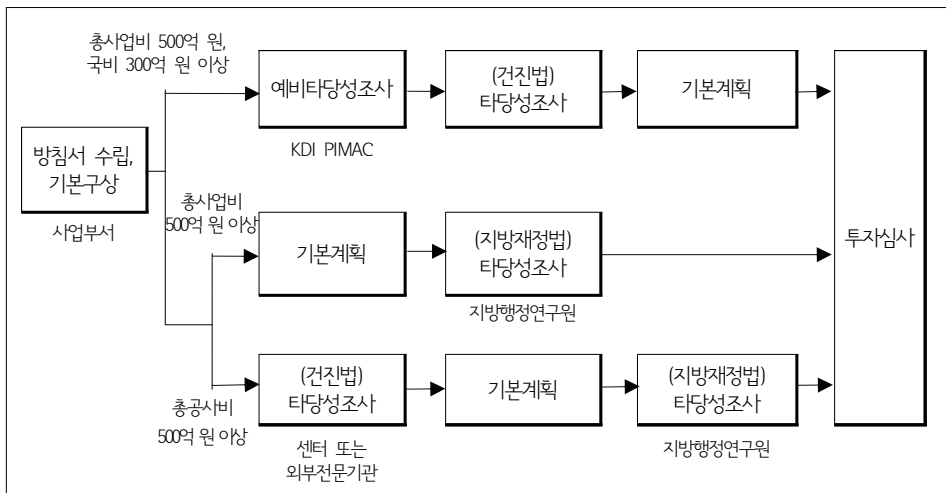
- 조사기간 : 사업별 계약일로부터 4개월
 -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3)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

(1) 의무 타당성조사

-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타당성조사
 -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 포함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

-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실시
-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은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



[부록 그림 2] 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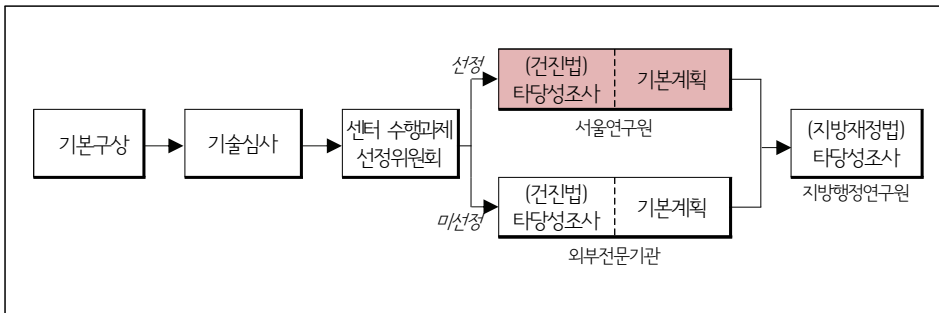
(2) 비의무 타당성조사

- 비의무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부서의 필요 또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타당성조사
 - 센터는 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’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
 - 센터 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기존과 같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(기술심사담당관) 또는 학술용역심의회(조직담당관)를 거쳐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(단, 조사 준공 전 센터에서 타당성검증 수행)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는 비의무 타당성조사에 대해 센터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선정
 - 타당성조사 비의무 사업인 경우 사업부서는 자체 방침 및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에 타당성조사 수행을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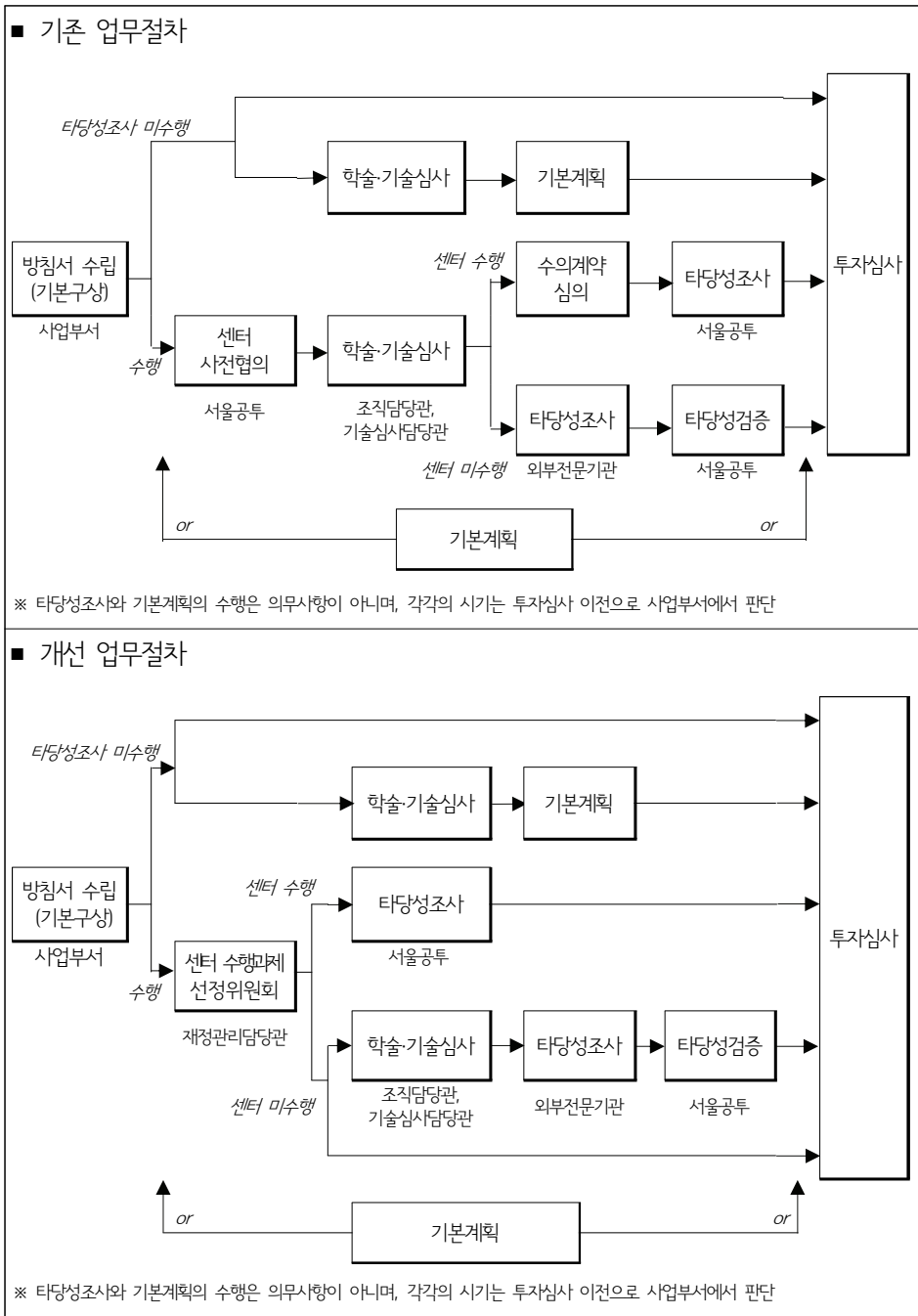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는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센터 수행과제로 선정하고, 타당성조사 비용은 서울연구원 사업비(출연금)에 반영하여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시행
- 단, 출연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자치구 사업 등의 경우 센터와 수탁 과제 형식으로 수행(수행 여부는 재정관리담당관과 협의)

(3)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

- o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의 경우 학술·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서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중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과제를 선정
- o 단,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업체 선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센터가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는 제한적으로 시행
 - 센터 수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행
 - 적격성조사 필요사업, 민간재원 또는 기금 투입 사업,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, 사업의 주요 기능이 둘 이상인 복합 사업이거나 사업 시행에 여러 이해관계자(기초자치단체, 공기업, 정부기관, 민간단체 등)가 참여하는 사업, 기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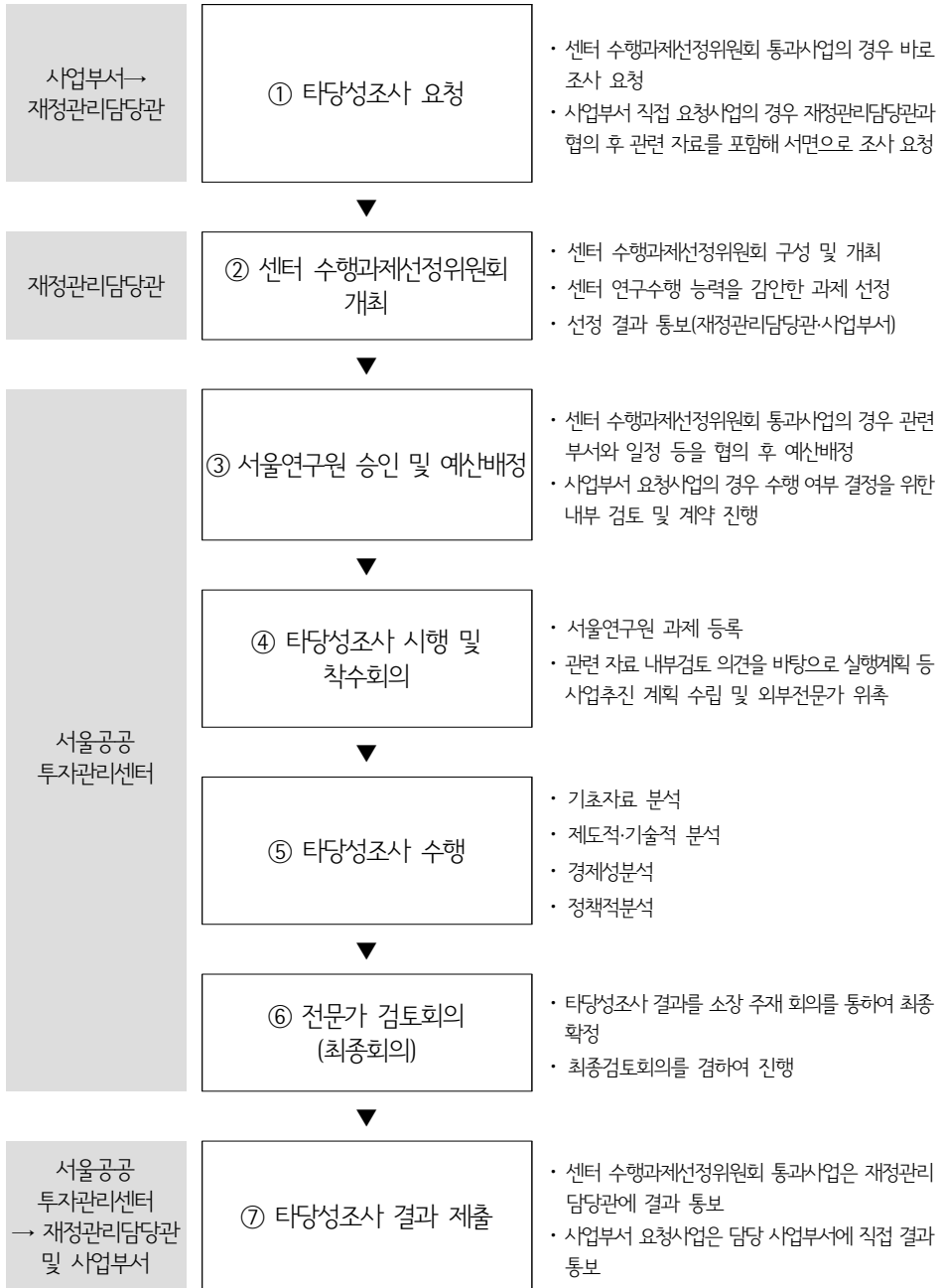


[부록 그림 3]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안



[부록 그림 4] 비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

4)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업무절차



(1) 타당성조사 요청 【사업부서→재정관리담당관】

- 사업부서는 타당성조사 요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 제출
 - 사업계획서는 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 자료가 되므로 사업부서로 하여금 가능한 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, 기본적으로 사업의 배경 및 목적,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, 사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
 - 사업부서의 직접 타당성조사 요청도 가능
 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자치구 사업 등의 경우 재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센터에 타당성조사 수행을 직접 요청
- ※ 단, 이 경우 타당성조사의 수행 여부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센터와 재정관리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

(2)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개최 【재정관리담당관】

- 재정관리담당관은 ‘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’를 개최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타당성조사 사업 선정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시기 등
 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는 재정관리담당관, 예산과, 기술심사과, 조직담당관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각 1인, 외부 위원 2인(투자심사위원 등) 등 총 7~8인으로 구성
 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는 격월(또는 매월)로 개최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선정 과제는 재정관리담당관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요청
 - 재정관리담당관은 과제의 우선순위, 중요도 및 센터의 업무 과부하 정도를 검토하여 사업부서 및 센터와 협의 후 과제 수행을 서면으로 요청

(3) 서울연구원 승인 및 예산배정 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】
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통과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내에서 현안과제로 수행
 - 출연금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과 별도 협의
 - 사업부서 직접 요청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과제로 계약
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통과 과제에 대해서 센터는 사업명, 사업개요, 사업규모, 자원, 분야 및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일정, 비용 등의 개략적인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
- 사업부서 직접 요청과제의 경우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연구원 내 과제관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, 과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략적인 과제 수행계획 수립

(4) 타당성조사 시행 및 착수회의 개최 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】

-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조사팀을 결정하고 수행계획을 검토
- 담당 조사팀은 배정받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소장에게 보고하고,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시 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에 회부
 - 조사팀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센터 소장과 관련 계획을 협의한 후 외주용역 등 필요시 과제관리위원회에 회부
 - 조사계획에 연구기간, 실행내역 및 외부연구진 구성계획 등 포함
- 착수회의는 센터 소장이 주재하며,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및 사업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외부연구진 등이 참석
 - 센터 소장이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팀장이 대리하여 진행

(5) 타당성조사 수행 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】

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

- 사업의 배경 및 목적,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의 주요 쟁점 등을 조사
 - 사업부서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,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의 쟁점을 파악

- 자연환경, 생활환경,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등 사업 기초자료 분석
 - 해당 사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중요도를 사전적으로 가늠
-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도입되는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
 - 대규모 건축·토목사업,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환경사업 및 신기술 도입사업 등 조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
 -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할 수 있음

② 경제성분석

-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편익·비용 비율(B/C ratio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률(IRR)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·재무성을 파악
 - 해당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조사팀은 수요 추정, 비용 추정 및 편익 추정을 실시하며, 추정방법은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이 결정
 - 단, 해당 조사의 추정방법은 센터 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
- 조사팀은 충분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, 업무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
 - 현장조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규칙의 현지실무심사에 준하여 추진
 -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현장조사 등은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의 협조를 통하여 추진
- 필요한 경우 위탁용역, 자문 등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
 -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은 사업별 경제성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, 회계, 경제 등의 분야의 전문가 위탁용역,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음
 - 사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행계획에 포함하여 연구원 내 과제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추진
 - 단, 과제 중간이라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팀장은 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후 과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음

③ 정책적분석

-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 요소들을 포함
 - 정책적 분석항목은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이 결정하되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및 투자심사매뉴얼 등을 참조
- 필요한 경우 위탁용역, 자문 등을 통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음
 - 해당 조사의 조사팀장은 사업별 정책적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, 회계, 제도, 법률 등의 분야의 전문가 위탁용역,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음
 - 사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행계획에 포함하여 연구원 내 과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, 부득이한 경우 과제 중에 별도로 진행
 - 단, 과제 중간이라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조사팀장은 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후 과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음

(6) 전문가 검토회의(최종회의) 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】

- 조사팀장은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전문가 검토회의를 소집
 - 전문가 검토회의는 소장이 주관하며 해당 사업의 조사팀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사업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
 -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사업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
 - 보완은 담당 조사팀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음

(7) 타당성조사 결과 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】

- 타당성조사 결과는 조사팀장이 최종 취합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출판부수 등을 결정하고 센터 소장의 결재 후 해당 부서에 통보
 -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통과사업은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 결과 제출
 - 사업부서가 직접 의뢰하여 수탁과제로 진행한 과제는 사업부서에 결과를 제출
- 해당 사업의 조사팀장은 수행을 완료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파일을 기획팀에 제출하고, 기획팀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

5) 타당성조사 주요 추진 내용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기준)

(1) 조사의 개요

- 사업의 배경 및 목적
 -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들의 배경 파악
 -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시
 - 사업계획서나 관련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파악
- 사업의 추진 경위
 -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었는지 경위 파악 필요
 - 타당성조사 사업에 포함된 경로 및 추진 주체의 조사를 통해 사업 분석의 쟁점 사항 파악
- 사업의 내용
 - 과거의 경험 및 자료를 통해 사업의 공간적 입지, 공사 내역 및 총사업비 규모를 미리 밝히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 수행

(2) 기초자료 분석

① 기초자료

- 일반 현황 분석
 - 사업 대상지의 자연환경, 생활환경 등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
- 사회·경제적 환경
 - 대상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, 지역총생산, 토지이용현황 등 검토
 - 인구 및 산업구조, 지역총생산은 사업의 파급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
- 교통 및 문화·관광 환경
 - 도로·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의 도로 종류별 차로 수 및 연장 교통량 등 교통 현황 파악
 - 문화 및 관광시설 등의 건립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·관광 현황 파악

② 상위 및 관련 계획

-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인지 알 수 있으며,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투자우선순위도 확인 가능

③ 국내·외 유사 사례

- 국내 및 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시사점 제공 가능

(3) 기술적 타당성분석

- 대형 토목건축 사업, 환경사업 및 신기술 도입 사업 등의 경우 기술적 분석 수행 필요
- 지질 및 수문 등의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시설의 설계를 위한 기술적 검토 수행

(4) 비용 추정

- 비용은 크게 초기투자비와 경상운영비로 나누어 검토
 - 초기투자비에는 부지보상비, 공사비, 부대비 등이 포함
 -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이 포함
- 초기투자비, 경상운영비 외에 재투자비,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을 추정

(5) 수요 추정

- 수요 추정은 재무성분석 및 경제성분석을 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
- 수요 추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
 - 해당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 추정
 - 수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접 모형을 도출
- 설문조사는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

[부록 표 1] 사업별 수요 추정방법 예시

부문	추정방법
교통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통수요 추정방법은 통행발생, 통행분포, 수단선택,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추정 ① 통행발생 : 각 교통존에서 발생하는 통행량과 도착하는 통행량을 추정하는 단계로 각 교통존별 여객 및 화물의 발생과 도착량 생성 ② 통행분포 : 통행발생 단계에서 추정된 발생도착 통행량을 교통존 간에 배분하는 단계로 교통존 간 여객 O/D 및 화물 O/D 생성 ③ 수단선택 : 교통존 간 O/D 자료를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별로 세분화하는 단계로 여객의 경우 승용차·버스·철도 등의 O/D가 생성되며, 화물의 경우 트럭·철도 화물 O/D 생성 ④ 통행배정 : 각 교통수단별 O/D 자료를 대상 지역 내 교통망에 배정하는 단계
수자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용수수요 및 용수공급을 추정하고 용수수급을 분석 ① 용수수요는 생활용수·공업용수·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·환경개수용수의 수요 추정 ② 용수공급 추정은 대상지역 내 공급시설 및 확장계획을 조사하여 향후 공급가능량 추정 ③ 용수수급 분석은 장래 용수수급을 전망하여 개발 전·후 과부족량 비교
기타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단지 또는 문화관광체육 단지 조성사업 등은 간접적인 파급효과²²⁾에 기인하는 수요가 높음 ·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 추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낙관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누어 수요 추정 검토 가능

자료 : 한국개발연구원, 2008, 「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(제5판)」 요약 정리

22) 직접 사업주체에게 '경제적'으로 주어지는 파급효과가 아닌란 의미로 사용

(6) 편익 추정

-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편익 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
-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편익 항목은 매우 다양하므로 각 사업계획에 따라 편익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 필요
- 각종 편익 항목이 식별되면 항목별로 단위당 기회비용 혹은 가치를 계산하여 편익 추정

[부록 표 2] 재무성분석 수입 항목 예시

시설	수입(예시)
유료공원	입장료
하수/치수	점용료, 사용료
유료도로/교통시설	통행료, 점용료, 사용료
주차장	시간주차수입, 정기주차수입, 기타수입(매점수입 등)
환경/재활용시설	시설운영수입, 재활용품 판매대금,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수료
도서관, 공연장 및 박물관	입장·사용료수입, 주차료수입, 임대수입, 기타수입(강좌, 식당운영수입 등)
복지	입소비용, 보조금 ¹⁾ , 기타
청사	임대수입, 주차료수입 등

주 1) 보조금은 시나 구의 예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재무성분석에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분석과 제외한 분석 모두 제시할 필요가 있음

자료 : 주재홍·신창호, 2012, 「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1」, p.80, 서울연구원

(7) 경제성분석

- 편익·비용 비율(B/C ratio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률(IRR)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
- 경제성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, 비용 단가,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분석 수행
- 경제성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, 사업성이 높아 민간이 스스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무성분석 및 민간투자 가능성
- 시설별 경제적 편익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(KDI PIMAC)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,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, 서울연구원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

(8) 정책적분석

-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 요소들을 분석
 - 정책적분석 항목은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및 정책 부합성,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, 시급성, 지역 간 균형,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등이며,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항목은 재원조달 가능성, 환경성 평가, 기타 제약요인이 포함
 -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 가능
 - 정책적분석 결과는 경제성분석 결과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
 - 정책적분석 결과는 별도로 계량화하지 않고, 추후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위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

[부록 표 3] 정책적분석 평가항목

분류	세부 평가항목
기본 평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계획 및 정책 부합성 ·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· 사업의 시급성 · 지역 간 균형 ·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
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원조달 가능성 · 환경성 평가 · 기타 제약요인
특수 평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별 특수항목

2_과업지시서 양식(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제출용)

과업내용서

【 〇〇〇 타당성조사 】

2015. 0월.

서울특별시

- 목 차 -

I	과업개요	0
II	과업내용서	
	1. 과업의 명칭	0
	2. 과업의 배경 및 목적	0
	3. 과업의 범위	0
	4. 과업수행 기간	0
	5. 과업의 내용	0
	6. 과업수행단계	0
	7. 과업내용지침	0
	8. 과업수행 일반지침	0
	9. 보안대책	0
	10. 성과품	0

○○○ 건립 타당성조사

I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○○○ 타당성조사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4개월
3. 수행기관 선정방법 :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심의
4. 과업목적
 -
5. 과업의 필요성
 -
6. 과업의 범위
 - 공간적 범위 :
 - 시간적 범위 :
 - 내용적 범위 :

Ⅱ 과업내용서

1. 과업의 명칭

- 본 과업의 명칭은 “○○○ 타당성조사”(이하 “타당성조사”라 한다)라 한다.

2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가. 배경

-

나. 목적

-

3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간범위 :

나. 내용범위 :

다. 시간범위 :

4. 과업수행 기간

- 착수일(계약일)로부터 4개월

5. 과업의 내용 (※ 과업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)

가. 기본방향

1) 건립 타당성분석

- 건립의 필요성(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조사)
-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쟁점사항 파악

2)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

- 일반현황, 사회·경제적 환경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검토
- 시설의 수요 및 공급 등 검토
- 관련 법규 검토
- 국내·외 사례조사

나. 기술적 타당성분석

1) 사업계획 검토

2) 기술적 타당성분석

다. 비용 추정

- 공사비, 설계비, 부대비, 운영비(유지관리비용) 등의 초기 건립비용 추정
- 연차별 투입 사업비 추정
- 재투자비,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 추정

라. 수요 및 편익 추정

1) 수요 추정

- 해당 사업 개설에 따른 수요 검토
- 편익 추정을 위한 장래 수요 추정

2) 편익 추정

- 해당 사업 편익 항목의 분류 구체화
- 편익 항목별 가치평가 및 편익 추정

마. 경제성분석

1) 경제성분석

- 할인율, 분석기간 등 주요 변수 결정
- 비용/편익 비율(B/C ratio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률(IRR) 추정

2) 민감도분석

-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
- 필요시 시나리오별 분석

3) 재무성분석

바. 정책적분석

1) 기본 평가항목

- 관련 계획 및 정책 부합성,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, 사업 시급성, 지역 간 균형,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

2)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

- 자원조달 가능성, 환경성 평가, 기타 제약요인

3) 특수 평가항목

- 사업별 특수항목

사. 종합평가

1) 경제성분석 결과를 종합평가

2)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, 사업계획 수립

3) 추진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제시 및 정책제언

6. 과업수행단계

○ 과업수행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.

1) 착수회의(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)

- 과업수행계획서, 보안각서 작성

2) 중간회의(계약일로부터 1개월~0개월 이내)

- 필요시 협의하여 개최

3) 최종 검토회의(계약만료일 15일 이전)

- 타당성조사 결과(안)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

4) 최종성과품 제출

- 타당성조사 보고서, 타당성조사 결과 CD

7. 과업내용지침

- 본 타당성조사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○○○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.
-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·정리하여,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, 타당성조사는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,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·정리하여야 한다.
- 타당성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,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,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.

8. 과업수행 일반지침

※ 과업의 수급인이 외부전문기관인 경우

- 본 과업의 수급인이 외부전문기관인 경우, 과업 준공 이전에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서울시와 수급인은 센터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·보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치결과서를 작성한다.
-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의견서 및 조치결과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

9. 보안대책

10. 성과품

가. 제출내용

(최종)성과품 및 제출자료	수량	비고
타당성조사 보고서	30부	-
타당성조사 결과 CD	1식	-
기타 관련 자료	1식	필요시

3_타당성조사 의뢰서(사업부서)

타당성조사 의뢰서

※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,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

1] 사업개요

사업명		분야	
사업 구분	시 사업(), 자치구 지원사업(), 특별조정교부금 사업()		
	신규사업(), 재심사 사업(), 재상정 사업()		
추진 주체	시	○○부 / ○○과 / 담당자 (전화번호 / E-mail)	
	지자체	지자체 / 담당자 (전화번호 / E-mail)	
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취지 : ○ 필요성 : ○ 기대효과 : 		
추진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- 관계법령·상위 계획·공약·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		
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관계기관(각 부처·지자체·공기업·기타 민간)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		
타당성조사 추진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당성조사 추진목적 및 경위 등 		

2 사업계획(안)

<p>사업개요</p>	<p>○ 위치 : ○ 내용 : - 전체 규모 : 부지 m^2 / 연면적 : m^2 - 세부 내용 :</p>		
<p>총사업비</p>	<p>총계</p>	<p>○○백만 원</p>	<p>사업기간</p> <p>○년~○년</p>
	<p>재원별</p>	<p>국비:○○, 시비:○○ 구비:○○, 민자:○○</p>	
	<p>회계별</p>	<p>일반회계, 특별회계</p>	
<p>사업비 산출내역</p>	<p>○ 총계 ○ 공사비, 보상비, 용역비, 기타</p>		
<p>연도별 소요</p>	<p>○ 사업수행주체 : (국가, 서울시, 자치구, 민간 등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 (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)</p>		

3 공공시설 운영계획

<p>소요예산</p>	<p>○ 소요예산 산출근거 - 인건비 - 운영비</p>
<p>사업운영체계</p>	<p>○ 운영주체 : ○ 소요인력 : ○ 운영계획 : ※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</p>

4] 타당성조사 자료

<p>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</p>	<p>○ 수요공급 지표에 의한 사업 필요성, 공공서비스 현황 등 설명</p>
<p>관련 계획과의 연계성</p>	<p>○ 타 법령에 의한 계획(국토이용계획, 도시계획 등)과의 부합성, 상위 계획에 반영 여부,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</p>

5] 선행 연구용역 수행이력

<p>사전용역</p>	<p>○ 조사기관 : ○ 조사기간 : ○ 용역결과 : 경제성분석(B/C), 기타 분석결과 등</p> <p>*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*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'사전용역 미수행' 등으로 명기</p>														
<p>선행 과제관리위원회 신청 이력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신청시기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사업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미선정 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차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차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</p>				신청시기	사업내용	미선정 사유	1차				2차			
	신청시기	사업내용	미선정 사유												
1차															
2차															

4_타당성조사 수행의견서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)

타당성조사 수행의견서

□ 사업명 : (사업부서명)

센터 종합의견	수행가능여부	○, ×
	조사의 필요성	상, 중, 하
	조사의 시급성	상, 중, 하
	계획의 구체성	상, 중, 하
	비고	(※ 의견 기술)

〈심사의견〉

심사항목	심사의견
타당성조사 요건	○
조사의 필요성	○
조사의 시급성	○
사업계획의 구체성	○
기타 사항	○

5_타당성검토 의견서 양식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)

1. ○○ 사업

1] 검토 종합의견

사업요약	○ 해당 사업은 ○○을 신축하는 사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합의견	사업계획 적정성 분석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91 591 1153 672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적정</th> <th>조건부적정</th> <th>부적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업계획 적정성 분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✓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 제시</p>				구 분	적정	조건부적정	부적정	사업계획 적정성 분석	✓																	
	구 분	적정	조건부적정	부적정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계획 적정성 분석	✓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제성 분석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 원, %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91 865 1153 1097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심사의뢰서</th> <th>센터</th> <th>비고(중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재무성</td> <td>PI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FNPV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FIRR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경제성</td> <td>BC Ratio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NPV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IRR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경제성 검토 결과 B/C 비율, NPV, IRR 제시</p>				구 분	심사의뢰서	센터	비고(중감)	재무성	PI	-	-	FNPV	-	-	FIRR	-	-	경제성	BC Ratio	-	-	NPV	-	-	IRR	-	-
구 분	심사의뢰서	센터	비고(중감)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무성	PI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	FNPV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	FIRR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제성	BC Ratio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	NPV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	IRR	-	-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의견	○ 기타의견 제시 - 사업 관련 추가 검토 사항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판단근거	<p>○ 센터 경제성분석 시 산출 근거 제시</p> <p>○ 편익 항목 검토</p> <p>○ 항목별 산출근거 검토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② 분야별 판단근거

2-1. 수요 및 공급 추정의 적정성

분석결과	적정	✓	부분적정		부적정	
------	----	---	------	--	-----	--

검토의견

- 수요 및 공급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제시
 - 근거자료, 이용인구, 추정방법, 적용단위, 미래예측 등 검토

2-2. 사업비용의 적정성

분석결과	적정	✓	부분적정		부적정	
------	----	---	------	--	-----	--

검토의견

- 사업비용 검토에 대한 의견 제시
 - 토지비용, 공사비용, 기타비용, 운영비용 등에 대한 검토

2-3. 사업수입 추정(재무성분석)

분석결과	적정	✓	부분적정		부적정	
------	----	---	------	--	-----	--

검토의견

- 재무성분석을 위한 사업 수입 추정 등 검토
 - 사업수입의 산출근거, 보편·타당, 적정계상, 신규발생, 지속가능 측면 등 검토

2-4. 사업편익 추정(경제성분석)

분석결과	적정	✓	부분적정		부적정	
------	----	---	------	--	-----	--

검토의견

- 경제성분석을 위한 사업 편익 추정 등 검토
 - 편익의 산출근거, 보편·타당, 적정계상, 신규발생, 지속가능 측면 등 검토

③ 기타 의견

검토의견

- 기타 검토의견 제시